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6

발의연월일: 2020. 6. 24.

발 의 자:한병도·김성주·이원택

박재호ㆍ허 영ㆍ이상직

김승원 · 박상혁 · 김수흥

김철민 · 전용기 · 이병훈

이철규 · 윤영찬 · 김영배

송기헌 · 윤준병 · 민병덕

신영대 · 이용호 · 김민석

김윤덕 · 홍익표 의원

(23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도시의 저출산·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.

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'지방소멸위험지수 2019'에 따르면, 전국 228개 시·군·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(42.5%)이며, 지역을 세 분화해 읍·면·동으로 보면 1,503개가 30년 이내에 소멸될 지역으로 분 류되고 있음.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정부 여러 부처에서 정책 적을 수립해 시행했지만, 저출산·고령화 대응 정책으로만 한정되고 있 어서 청·장년층 생산가능인구(15~64세)의 감소를 막지 못하여 도시 내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도시 활력 증가, 인구감소 지역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음.

더욱이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및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임.

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제75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위기 지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5조의 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의3(위기지역 내 중소기업	제75조의3(위기지역 내 중소기업
등에 대한 감면) ① 다음 각	등에 대한 감면) ①
호의 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위	
기지역"이라 한다)에서 제58조	
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	
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	
지정된 기간 내에 「중소기업	
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	
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	
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	
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	
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	
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	
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	
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	
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	
분의 50(100분의 50 범위에서	
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	
그 율)을 경감하고, 2021년 12	
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	
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	
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	
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	

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(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)을 경감한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・③ (생 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

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구

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

감소위기지역